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2. 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1. 1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11. 13.

다. 상정일자: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2020.1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가. 제안이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시행 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물품 지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신설

○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한 제11조(준용규정) 삭제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사업시행 근거 마련과

○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언택트(Untact) 시대의 흐름 속에 배달문화가 변화하게 되고, 택배 냉동식품 주문량 증가로 인한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쓰레기 소각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수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을 지급하고, 수거된 아이스팩 등 재활용품은 냉동식품 사업장, 전통시장 등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 하는 본 개정안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